

(齒)

(協)

(30)

(年)

(史)

「資料編 18」

大韓齒科醫師會 第7回 定期總會(1958年)

- ◇... 大韓齒科醫師會 제7회 定期總會는 1958년 5월 10일 서...
- ◇... 울大學강당에서 金溶瑠會長以下 任員을 비롯하여 中央委員 및...
- ◇... 代議員과 來賓으로 保健社會部長官, 同醫務課長, 同齒務係長, ...
- ◇... 大韓醫學協會長(代理), 大韓漢醫師會會長 등 參席下에 開催되었다...

齒科歷史編纂委員會提供

상오 10시 30분開會·金鍾玉(旭) 총무부장 司會로 國旗拜禮, 愛國歌奉唱, 殉國先烈에 對한 默念(故朴明鎭 서울齒大學長에 對한 默念)등 國民儀禮가 있는 다음 金溶瑠회장의 開會辭에 이어 보사부장관, 대한 漢醫師회장의 축사가 끝나자 5분간 休會한 후 李有慶부회장 司會로 各部報告에 들어가서 △총무부報告(金鍾玉)=① 口腔衛生強調週間을 <口腔保健週間>으로 그 名稱을 改正할 件 ② 入齒師에 關한 件 ③ 亞細亞國際齒科聯盟總會에 對한 件 ④ 서울齒大學教育年限延長의 件등에 대하여 論議되었다.

金鏡泳-慶北會館修理費는 어떻게 되었는가.
 金鍾玉-會館修理費는 160餘萬圓이 들었는데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會館特別 會計決算書를 보아 주시기 바란다.

崔海雲(경북)-入齒營業者의 議案을 왜 내놓게 되었는가.

金岐宇보사부齒務係長-入齒營業者는 45년前인 1914年度에 생긴 것인데 解放後 그들을 限地齒科醫師로 승격했으며 남어지 入齒營業者에 대한 問題로 2년 6개월을 끌어 오다가 國民醫療法 附則第6條에 依하여 既得權을 인정하게 되었고 지난 4월에 長官決裁가 있었다. 그러나 入齒營業者는 <齒衛院>으로 開業하게 될 것이다.

崔海雲-入齒營業者를 우리로서는 反對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金鍾玉-入齒營業者를 강습시키서 限地齒科醫師로 승격시키려는 것을 지난번의 大韓齒科醫師會 緊急임시總會에서 反對決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反對할 생각이다.

尹麒炳(전북)-倭政에 入齒營産者는 3年마다 그 免許를 書換했으나 解放後에 書換屆出을 하지 않았다면 拋棄(無効)한 것으로 보는데 入齒營業者가 오늘날 또 나오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金岐宇-먼저 말한바와 같이 國民醫療法 附則 第6條에 依據해서 既得權을 認定하여 入齒營業者免許를 주게 된 것이다. 軍政時에는 入齒師가 20名이라고 들었는데 結局 171名의 限地齒科醫師가 나왔었다.

이때 金永熙(서울)가 其他 事項에서 다시 討議하기로 하고 質疑終結을 動議하여 採擇되었다.

金昌圭(경남)-6月 9日을 口腔保健日로 왜 改稱하려는가.

金鍾玉-眼科에서는 <눈의 날>을 제정하였고 其他 部

門에서도 行事 첫날을 強調하고 있다. 그래서 6月 9日을 특별히 <구강보건일>이라 하자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衛生이라는 말보다는 保健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결과, 국민학교 교재를 조사해 보아도 이제 衛生이라하지 않고 保健이라하고 있으니, 時代的 變遷에 따라 口腔保健이라 稱한 것이다.

秋玉輝(경남)—우리는 아직도 많은 啓蒙과 實質的인 일이 많은데 週間行事의 첫날을 口腔保健日로 함으로서 諸般行事에 支障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金鍾玉—그 名稱이 달라졌다고 아무런 支障이 없을 것이며 6·9行事 추진은 더욱 強化되리라고 생각한다.

△決等報告(李東奐), 承認.

△地方實情報告=懇談會로 미루고 重要 案件을 먼저 討議하자는 林澤龍(전북) 動議可決.

△退任辭(金溶瑢)—無能한 사람으로서 2년간 會務를 보았으나 아무 成果도 올리지 못하고 물려감을 謝過하며 有能한 사람을 選出하여 會의 權威를 세워주기 바란다.

△臨時執行部選舉—臨時議長에 崔海雲을 推薦한다는 林澤龍動議를 泊手로 채택하고 臨時議長에 崔海雲취임하여 議事進行.

△會則修正의 件

가) 第2條 本會는 社團法人 大韓齒科醫師會라 稱함(社團法人挿入) 可決.

나) 第22條 本會는 左의 任員을 置함.

會 長	1名
副會長	4名
任 員	10名
監 事	3名 以上人員數明示件, 可決

다) 第6章 消費組合

第35條 本會는 消費組合을 둔다.

第36條 本組合은 組合員의 福利를 圖謀함.

第37條 本組合은 本會會員으로 構成한다.

第38條 本組合運營은 別途定款에 依하여 運營機構를 設置한다.

林澤龍議長은 이 條項의 慎重한 再檢討가 必要하다고 主張하고 尹麒炳은 第35條의 必要與否를 論難하자 崔海雲은 1955年度 總會에서 決定된 事實인즉 再論할 必要없다고 하고 金鏞泳의 無修正通過力說에 金壽福(경북)은 <第37條 本組合은 本會會員으로 하되 加入한 會員으로서 構成한다>로 할 것을 提案하는 한편 林澤龍은 審査委員構成을 希望하면서 第35, 6, 7, 8條 審議保留를 主張하였으나 金鍾玉은 原案通過시킬 것을 強調하였다. 金永熙, 崔希烈(전북)의 會長과 組合長과의 關係 또는

兼任與否質疑에 대하여 金鍾玉 총무는 會長이 組合長을 兼任할 수도 있고 兼任하지 않아도 좋도록 會則에 그것이 明示되어 있지 않다고 應答한 뒤를 이어 原案 可決.

△金鳴善(대한학협회장代理)—運參한 것을 謝過하고 外國에서는 齒科醫師가 優位에 있음을 밝히고 韓國에서도 齒科醫師가 尊位를 醫師보다 잘하는 모양이라고 웃으면서 醫師 6名에 齒科醫師 1名の 比率이니 齒科大學이 더 생겨서 齒科醫師가 많이 나와야 겠다고 말한 다음 寬容과 協助만 있다면 무엇이든 잘 될 수 있음을 指摘하는 要旨의 祝辭.

△任員選舉—各道代表가 銓衡委員이 되어서 會長候補者를 倍數公薦하여 無記名投票로 會長을 選出하고 新任會長과 前記 전형위원이 副會長以下 任員을 選出하자(金鍾玉案)는 動議에 金昌圭제청하고 金永熙는 正副會長을 無記 名投票로 할 것을 改議하였으며 秋章輝은 서울 5명, 慶南 3명, 慶北 2名, 各道 1명, 學會代表 1명과 臨時議長등이 正副會長과 任員을 選定하자고 再改議하였으나 結局 改議, 再改議를 각각 取消하고 金鍾玉案中 副會長도 倍數公薦하여 無記名投票로 하자(金永熙 添加案)는 것을 採擇하여 實施한 結果(監票委員殷仲基·金永熙).

△會長候補者 安鍾書 44票(當選)

金然權 4票

無 効 3票=投票數 51票.

△副會長候補者 金溶瑢 44票(當選)

李有慶 43票 "

崔海雲 40票 "

金昌圭 38票 "

金然權, 鄭喆九, 任胃燻, 林澤龍등 票數省略, 無効 8票 = 投票數 150票 × 4 = 200(監票委員殷仲基, 金岐宇)

△亞細亞國際齒科聯盟(亞細亞太平洋齒科會議) 第2次 總會報告(李有慶) 13시 30분~14시 同報告가 있을동안 新任正副會長과 各道代表가 大韓齒科醫師會의 學會長, 學術研究部長과 大韓齒科醫師會 監事 및 任員을 다음과 같이 選定發表.

△學會長 金永昌

學術研究部長 李春根

△監事 金然權, 鄭潤鈺, 林澤龍

△任員 申仁澈, 趙鏞起, 金達澤, 尹珖秀, 李漢水, 朴鍾文, 安珪珪, 徐炳益, 李東奐, 李奎明

하오 3시 20분 續開하여 崔海雲議長 司會下에 討議 계속.

△汎太平洋齒科聯盟에 關한 件

亞細亞國際齒科聯盟이 地域을 넓혀서 汎太平洋齒科聯盟으로 改稱된 것과 3년후에 第3次 總會를 日本에서 開

催하고 第4次(6년후)總會는 불가불 韓國에서 열게 될 것이라는 金鍾玉의 說明이 끝나자 殷仲基는 開催하는 것을 目標로 準備委員會를 構成하여 1年間 충분히 檢討해서 明年總會에 決定하자고 主張하고 金昌圭는 大韓齒科醫師會長 및 서울齒大學長, 學會長, 學術研究部長, 地方會長등으로 推進委員會를 構成하여 開催할 것을 力說하여 曰可曰否 討論이 展開된 끝에 金昌圭案을 可決하고 同豫算案도 可決하였다.

- ① 汎太平洋齒科聯盟會費 1년에 每人當 2百圓(5년간)
- ② 特別會計豫算案(汎太平洋齒科聯盟總會 2千 1百 70萬圓) 每人當年額 7千圓(5년간)

△緊急動議=大韓齒科醫學長에 선임된 金永昌등단하여 一身上形便으로 學會長職을 固辭한다는 發言이있자 즉각 接受하고 다시 銓衡委員會를 召集하여 다음과 같이 選出하였다.

學會長 李春根, 學術研究部長 李永玉

△豫算案=大韓齒科醫師會費 每人當年額 3千 6百圓(學會費 1千 2百圓 포함)에 依한 1958年度 豫算案 無修正通過.

△齒醫務行政機構變更推進의 件=保健社會部職制中 <齒務係>를 <課>로 昇格하도록 關係當局에 建議할 것을 可決.

△消費組合強化의 件=明 11日 開催되는 消費組合總會에서 討議하기로 可決.

△入齒營業者免許交付의 件=이 案件이 上程되자 李迥柱는 入齒營業者免許를 論하기 前에 自家肅清을 해야 한다고 前提한 다음 正當한 免許아닌 者는 法에 依해서 處斷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며 大韓齒科醫師會는 情實을 떠나라고 怒發大發한데 對하여 李有慶은 不正免許에 對하여는 保社部에서 處理할 것이고 大韓齒科醫師會總會에서 論할 性質이 아니라고 反駁하고 丁達秀(전남)은 法聖浦에서 開業하고 있는 <김경수> 免許不正嫌疑에 대한 調査依類建議를 大韓齒科醫師會에 보냈는데 1년이 되도록 回答이 없음을 非難하자 金岐宇 齒務係長은 大韓齒科醫師會에서 建議있으면 處理하겠다고 하였으며 金鍾玉은 劉鍾德이 同期同窓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處理하지 않았다고 解明하였으나 丁達秀는 다시 不滿을 表示하자 崔海雲議長이 事務怠慢에 대하여 前任員으로서 謝過한다는 말로 一段落한 다음 本論에 들어가서 入齒營業者免許에 대한 林榮均(경기) 質問에

會岐宇齒務係長—국민의료법 附則제 6조에 依해서 既得權을 인정하고 入齒營業者免許를 更新하는 것이지 새로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다.

安鍾書—美軍政때 내가 齒科醫師資格審査委員으로 있었고 그 당시 美軍政法令에 依하여 入齒師를 講習시키

限地齒科醫師로 昇格하였으며 이와같은 措置는 다시 없을 것으로 들었는데 이제 入齒營業者가 나온다는 것은 納得할 수 없다. 美軍政法令을 無視한다면 모르거나와 그렇지 않다면 入齒營業者를 論議하는 것이 무슨 소라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殷仲基—(전남)—入齒營業者는 3年마다 免許書換을 하지 않으면 無効가 되는데 오늘까지 既得權만 살아있는가.

尹醫務課長—入齒營業者는 3年마다 免許書換을 하였으나 解放된後 그 法的 根據가 없어졌다. 즉 1942(昭和 17年)년부터 3年되던 해에 8·15해방이 있었으니 既得權이 살아 있다고 본다. 우리는 法에 依해서 免許更新을 해주는 것이다.

金岐宇齒務係長—行政府에 있으면 上司의 말대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와같은 일은 나個人이 하는 것이 아니다. 入齒營業者에 對해서 이미 齒科醫師會員들이 保證人이 되어 있다.

李有慶—1947년에 入齒師를 講習시켜서 限地齒科醫師로 만들때 나하고 安鍾書가 齒科醫師資格審査委員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關係當局에 말했다. 入齒師가 없어지고 限地齒科醫師가 되었으니 入齒師는 영원히 없어진 것이다. 現行法에 失手를 하나한 것이있는데 入齒營業者免許를 주므로써 또하나 失手를 할 생각인가. 道義의으로나 法的으로나 大韓齒科醫師會로서 入齒營業者를 容納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없애려고 努力할 것이다. (拍手)

結局 入齒營業者免許交付 反對決議를 採擇하고 그 建議方法은 新任員에 立입할 것을 可決.

△國民醫療法中改正建議案(慶南)=國民醫療法中

1. 第59條 醫師, 齒科醫師, 漢醫師, 保健員, 助產員, 看護員은 所管同業者會의 會則을 遵守하여야 한다(現醫療法 第59條는 第60條로 變更함).

2. 第61條 第59條를 違反한 者는 所管同業者會長の 申告에 依하여 地方長官은 一定한 期間 業務의 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

3. 現醫療法 第10章 罰則中 <國貨>를 <國貨>로 改正함.

金昌圭의 提案理由說明이 끝나자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慶北提案인 國民醫療法 改正建議件 <開業届出制를 許可制로 改正할 것>만은 再檢討하기로 可決.

△서울齒大의 學年延長의 件

6年制實施를 推進하기로 可決.

△開業手續에 納稅量 증添附廢止件 可決

△技工士資格賦與의 件 좀더 研究하기로 保留可決

△서울齒大學長決定促求의 件

金昌圭動議를 可決

△閉會(金昌圭先唱으로 萬歲삼창리에 閉會하고 參席者 一同 <칸뚜리클럽>에 마련된 懇親宴會場으로 向發) <崔曉峰記錄>.

▲中央委員및代議員出席者名單(無順)

△서울 = 李圭明, 吳在仁, 金仁哲, 李喜炳, 車尙駿, 池憲澤, 張錫煥, 文洪祚, 鄭潤鈺, 朴泰植, 鄭五相, 韓忠集, 李壽景, 鮮于良國, 金永熙, 邊鎬鐸, 徐丙瑞, 具

本興, 張完植.

△慶南 = 金昌圭, 高相穆, 宋允玉, 李永泰, 金富哲, 秋玉燁, 姜德仁, 劉基亨.

△慶北 = 金鏞泳, 秋章燁, 崔海雲, 金錫濟, 金壽福, 白龍鳳, 曹信明, 朴來榮, 具滋益, 李烈熙, 宋在星.

△京畿 = 林榮均, 金鸞衡, 李周喆.

△忠南 = 任胄琳, 李暎衡, 柳秉呂, 文章益.

△全南 = 殷仲基, 盧基燮, 丁達秀, 李清鍊.

△全北 = 林澤龍, 尹麒炳, 崔希烈.

□……여러 선생님의 힘을 입어 하기 장소에 개설하였습니다. ……□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

大宇齒科材料商社

崔壯祚·崔南祚

서울 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五街 6-13

(漢陽빌딩 405號)

電話 (28) 4579

금강치과상사

서 병 수

전북 군산시 중앙로 3가 195

TEL 8179번